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 11.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 11. 20.
-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8.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가. 제안이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3, 4조)
- 3) 서비스 내용(제5조)
 - 출산후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되 5일이상 이용한 경우
- 4) 지원신청 및 이중지원 제한, 환수조치(제6~8조)
 -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서류구비 구청장에게 신청
- 5) 운영지침 및 협조요청, 지원관리 (제9조~11조)

3. 검토보고 (이주현 전문위원)

- 이건 조례안 “산후조리비 지원 사무”는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고자료 1,2)
-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사례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동작구가 2010.11.18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종로구, 강남구, 동작구 등 총 4개구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경우 광양시, 순창군, 충주시 등 총 15개 시·군·구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건 조례안은 14개 본칙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례안 용어와 정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서비스 내용, 지원신청, 이중지원 제한과 환수조치, 운영지침, 협조요청 및 지원관리, 부칙의 적용례 등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 한편, 최근의 자녀 양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이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출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875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연간 3억 8026만 8천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이 편성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